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60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이성권·신성범·조승환

최은석 • 주진우 • 권영세

조지연 • 박수민 • 최수진

유상범 · 김기현 · 이인선

송언석 · 안상훈 · 서천호

우재준 • 조은희 • 조배숙

유용원 · 김도읍 · 김상욱

박수영 · 이달희 · 김희정

성일종 · 김석기 · 엄태영

송석준 • 이만희 • 김은혜

이철규 • 김종양 • 김대식

권영진 • 박형수 • 곽규택

정연욱 · 김정재 · 강선영

의원(3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적국이 아닌 외국 등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방 조한 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허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지형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추세에 대비하지 못한다는 지적 과 함께 간첩행위와 국가기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군사상의 기밀이 국가기밀의 범주에 속한다는 판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 기되고 있음.

이에 간첩행위와 국가기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간첩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다변화되는 국세사회의 흐름에 대비하여, 국민을 위한 국가의 안보를 지켜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98조, 제98조의2).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이하 간첩이라 한다)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해당 외국 등에 알려질 경우 국가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전항의 기밀을 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第98條(間諜) ① 敵國을 爲하여 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幇 助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 軍事上의 機密을 敵國에 漏

 泄む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신 설>

개 정 안

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 · 누설·전달·중개(이하 간첩 이라 한다)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

<삭 제>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해당 외국 등에 알려질 경우 국가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이를 방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전항의 기밀을 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